

의왕시 고시 제2026-51호

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0-384호(2010. 11. 29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8-12호(2018. 2. 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의왕시 포일로 104 일원의 내손라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3. 6.
의 왕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: 의왕시 포일로 104 일원
3. 정비구역의 면적: 93,990㎡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가. 명칭: 내손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손재만)
나. 사무실 소재지: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6, 제일프라자 705호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112개월(변경)
6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: 2026. 3. 6.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공동주택	63,851.2	17.16	299.12	96.47	아파트	지하4층, 지상17~34층
근린생활시설				-	근린생활시설	지하1층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※ 세대수 변경 없음.

구분		공급면적(㎡)	전용면적(㎡)	세대수	구성비(%)
일반분양	전용면적 85㎡미만	67.06	49.60	234	91.83
		66.95	49.40	103	
		80.21	59.44	759	

		80.42	59.50	175	
		100.86	74.76	149	
		112.62	84.55	440	
		113.91	84.65	142	
	소 계			2,002	
임대	전용면적 43㎡이하	53.62	39.44	102	8.17
	전용면적 60㎡이하	80.21	59.44	38	
		80.42	59.50	38	
	소 계			178	
합 계				2,180	100

※ 변경사유

○ 건축분야

- 설계개요(근린생활시설 레이아웃 및 면적변경, 연면적 변경 등)
- 사용승인예정일 변경(2026. 6. 9.)
-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공간특화에 따른 공간 및 동선수정, 폐기물 보관 및 자전거 보관소 위치 변경 등
- 필로티 및 PS 일부구간 삭제 등

○ 구조분야

- 단지 내 L형 옹벽 시공 공법 변경 등

○ 토목분야

- 단지 내 조경계획변경(조경면적·생태면적·시설물계획·식재계획 변경 등)

○ 기계분야

- 단위세대 환기설비 방식 변경 등

9. 관련도서 비치: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(☎ 031-422-8475)